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75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2. 2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75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기간 확대, 1인 창조기업 요건 확인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인 창조기업 고시 업종 삭제(안 제3조 제3항)

-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중 고시로 정한 5개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용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온라인 교육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향 편제됨에 따라 고시에서 삭제

○ 1인 창조기업 요건 확인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호)

- 1인 창조기업 요건 확인 시 상시근로자수 유무를 '건강보험가입자명부'로도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증빙서류 인정범위에 추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기간 확대(안 제12조 제1항)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해 운영 내실화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5. 의견 제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 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54, 팩스 042-472-34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개정고시[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② (생 략) ③ 시행령 별표1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 <u>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u> 1.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3) 2.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4) 3. 가죽·가방·신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5) 4. 온라인 교육학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85504) 5.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85659)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삭 제)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중소기업 청장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1. (생 략) 2.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u> 3. (생 략)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중소기업 청장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1. (현행과 동일) 2.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u> 3. (현행과 동일)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u>2년</u> 으로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 3년-----.